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, 미세먼지 저감, 재생에너지 인·허가·보급 등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1) 정원의 총수 : 618명 → 636명(증18명)

가) 집행기관의 정원 : 607명 → 625명(증18명)

○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 별표3)

1) 본청 총계 : 300명 → 318명 (증18명)

가) 일반직 : 295명 → 311명(증16명)

- 6급이하 : 279명 → 295명(증16명)

나) 연구직 : 3명 → 5명(증2명)

- 연구사 : 3명 → 5명(증2명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, 제30조, 별첨 1

○ 예산조치 : 기준 인건비 반영

○ 입법예고 : 2019. 10. 24~2019. 11. 4, 이상없음

○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등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 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정원의 총수를 618명에서 636명으로 18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,

○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고,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